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-55호

당산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59호(2007.08.02.)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-1 일대 당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하고,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6월 29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정비구역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당산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다. 정비계획 변경 내용

1) 토지이용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2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

가) 도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나) 공원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다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3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나) 건축시설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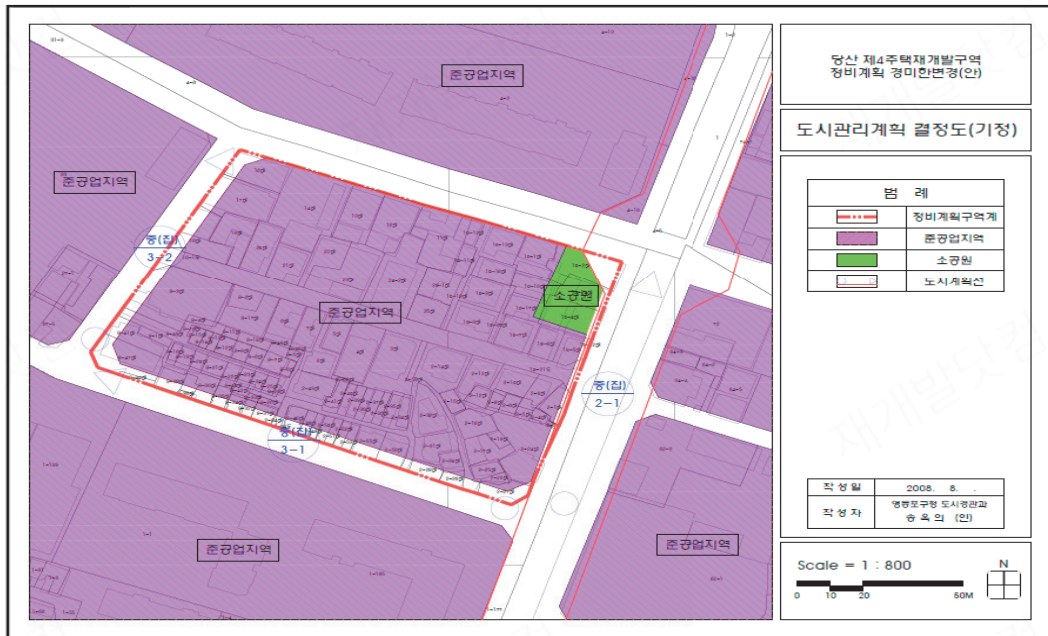
4) 정비사업 시행계획 (변경 없음)

<내용 생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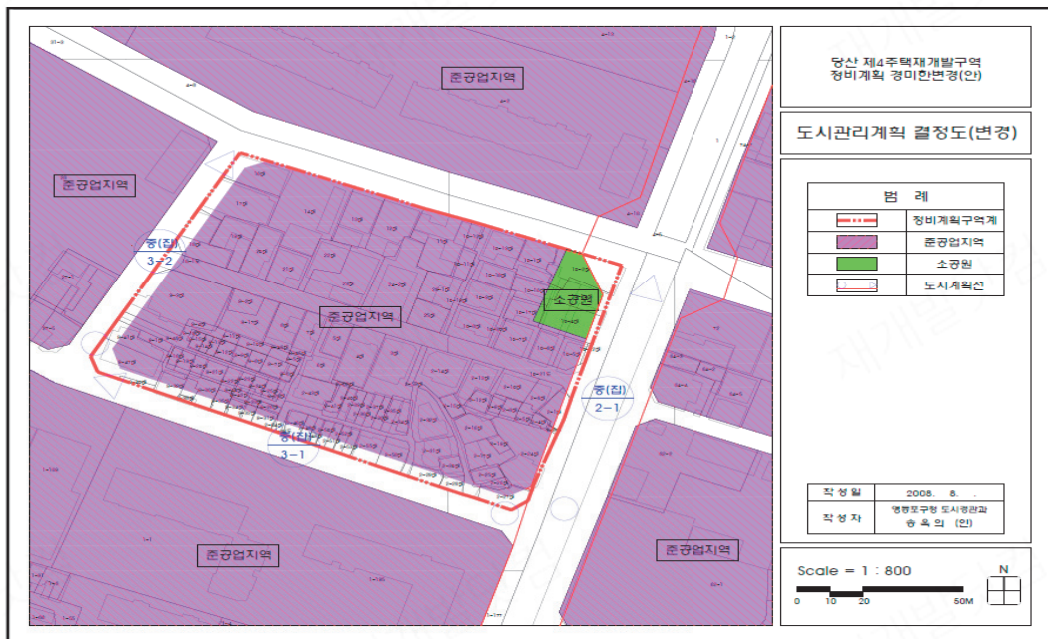
2. 관련 도면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□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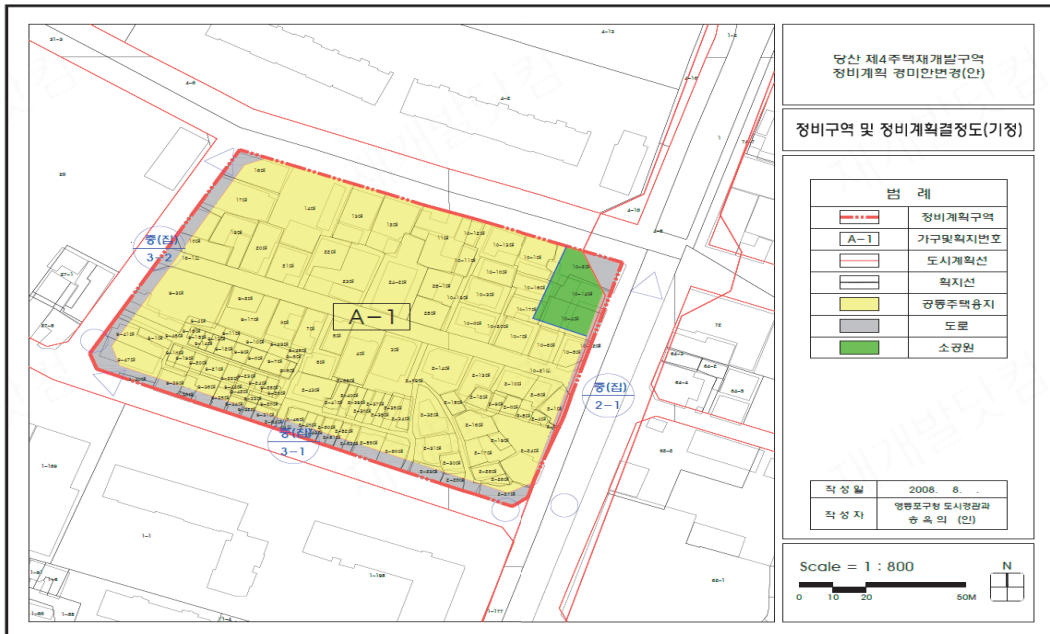


□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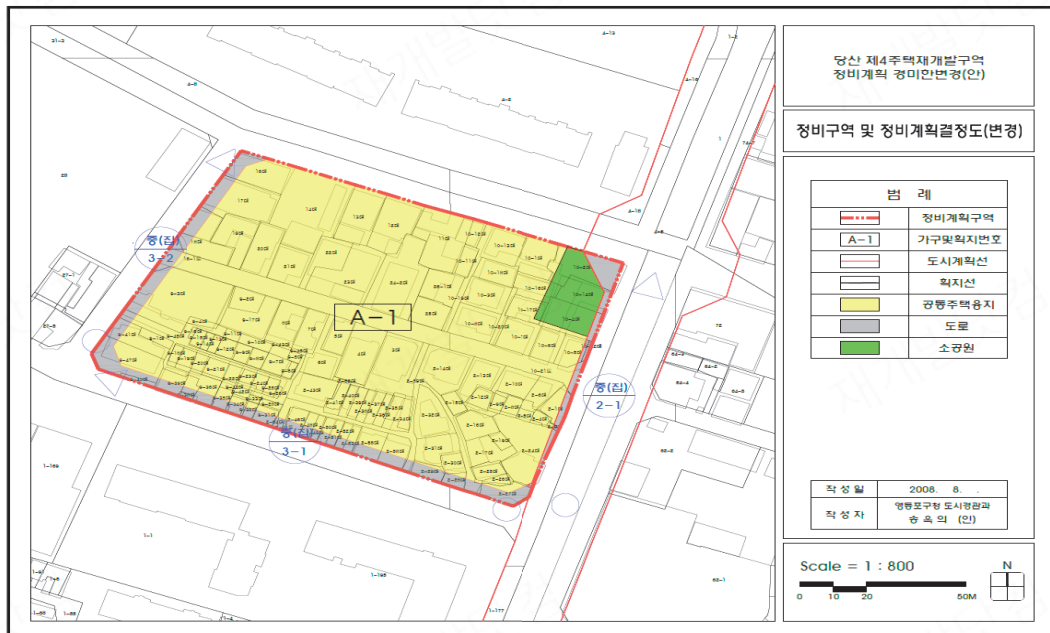


나. 정비구역(계획) 결정도

□ 기정



□ 변경



3. 고시 및 관련도면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택과 (☎2670-3660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